

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5. 24(화)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년 5월 1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8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2005. 5. 23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·노인·모부자가정 세대의 생계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천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·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계약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세대의 자활·자립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공공시설의 범위 (안 제2조)
 -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로 하며, 매점의 경우 적용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함

○ 신청자격 (안 제5조)

-신청자격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, 「노인복지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, 「모·부자복지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·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로서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규정함

○ 우선계약 (안 제6조)

-저소득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장 계약체결 할 수 있도록 함

○ 설치계약 해지 (안 제8조)

-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이천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·계약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·노인·모부자가정 세대의 생계 도움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우선하여 계약. 저소득 세대에 자활·자립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일부수정의결(만장일치)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일자 및 제안자 : 2005. 05. 23.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의 6인

나. 수정이유 :
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, 노인, 모부자 가정 등 저소득 세대의 생계유지와 자활 및 자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,
- 조문내용 중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후 수정 의결

다. 수정주요골자

- 조문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내용 삽입(안 제5조)
 - 안 제5조 조문내용중 “현재” 다음에 “6개월 이상”을 삽입.

8. 기타사항 : 없음

- ※ 첨부: 1.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2. 수정안 조문 대비표